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29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7월 11일

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증감된 통리 수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통·리장의 정수 조정(별표)
 - 595명 통·리장 ⇒ 605명 통·리장으로 조정(통·리장수 10명 增)
 - 고아읍(중 3개리) : 원호푸르지오 신축 (원호8리)
경남아너스빌 분리 (문성5리)
초원아파트 분리 (항곡2리)

- 인동동(증 2개통) : 구평영무예다음 신축 (63통)
구평휴먼시아 신축 (64통)
- 진미동(증 2개통) : 과밀통 분통 (22, 23통)
- 양포동(증 3개통) : 휴먼시아 신축 (44~46통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결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95명에서 고아읍 증 3명, 인동동 증 2명, 진미동 증 2명 , 양포동 증 3명 총 10명이 증가된 605명으로 조정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되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